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919호)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435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1.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919호)	1
2.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435호)	2
II . 총괄적 검토	3
III . 개별법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	5
1. 「노후준비 지원법」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5
2.. 「모자보건법」의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종사자 및 산후조리도우미’ ...	9
3. 「약사법」의 ‘약사·한약사’	12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 ...	15
5. 「의료법」의 ‘의료인 및 의료법인의 임원’	19
6.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위탁제조판매업자’	23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대마재배자’	26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28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응급구조사’	31

10.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보조공학사’	33
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인력’	37
1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지방의료원 임원’	41

I. 개요

1.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91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16.

(3) 회 부 일 : 2024. 8.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2.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43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30.

(3) 회 부 일 : 2024. 9.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II. 총괄적 검토

□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이 있음.

-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으로 보호받는 제도임.¹⁾

- (한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으로 보호받는 제도임.²⁾

□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전에는 사무처리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써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있었는데,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금치산·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박탈·제한함으로써 금치산·한정치산자의 자기결정권을 원천적으로 무시하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행위능력을 개별적·한정적으로 제한하여 피후견인의 잔존능

1)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력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취지에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것임.

- 그러나 종래 금치산·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개별 법률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 이후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단순히 용어만 대체하여 정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적극적으로 동의유보를 결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증하지 아니하고 단지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이에 각 제정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12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각종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 또는 기술적 지식이 요구되거나 상당한 주의의무가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바,

직무수행능력의 사전검증 가능성, 심신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관한 사후적 통제방안 마련 여부, 직역의 특수성 및 공익과의 밀접성, 유사한 직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Ⅲ. 개별법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

1. 「노후준비 지원법」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결격사유³⁾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김도읍의원안(제2919호)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 1. (생략) 2.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3. ~ 6. (생략) ② (생략)	제12조(결격사유) ① ----- ----- -----.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u>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3) 「노후준비 지원법」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국민연금공단),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시·도) 또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시·군·구)에서 노후준비와 관련한 진단·상담·교육 등을 수행하는 사람임.⁴⁾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면 노후준비 총론,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경력관리·주거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교육훈련과정(총 65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는데,⁵⁾

이를 위하여서는 교육시간 중 90% 이상을 학습하고, 과제 및 시험 등 평가항목을 합산한 점수가 총점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어야 하는바, 노후준비서비스 이용자의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양질의 맞춤형 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사전에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교육훈련 과정 >

(단위: 시간)

과목	주요 내용	교육시간
노후준비 총론	○ 노후준비의 필요성 및 노후준비 진단지표 ○ 생애전환기에 대한 이해 ○ 상담에 대한 이해 ○ 노인의 심리·사회적 특성 변화	13
재무설계	○ 노후소득보장 일반 ○ 다층적 연금보장체계에 대한 이해 ○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 개인신용 관리 및 부채 관리 ○ 재무설계 실습	20

- 4) 「노후준비 지원법」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에서 노후준비와 관련한 진단, 상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5)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노후준비서비스 교육과정)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과목	주요 내용	교육시간
건강설계	- 노후 건강생활의 이해 - 의료보장제도 및 노인장기요양제도 - 노인복지서비스의 이해 - 건강설계 실습	8
여가설계	- 여가의 개념과 특성 - 노후의 여가생활 - 사회활동서비스 - 여가설계 실습	6
대인관계 설계	- 부부관계 및 사회적 관계 - 노후 대인관계 상담사례 - 대인관계설계 실습	7
경력관리 설계	- 노년기 일의 의미와 실태 - 노인일자리 정책 - 경력관리설계 실습	5.5
주거설계	- 노후주거의 이해 - 노후주거 계획 - 주거설계 실습	5.5
계		65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하여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등의 관리체계⁶⁾가 갖추어져 있는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게 되어 양질의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할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볼 측면이 있음.

- 6) 「노후준비 지원법」 제18조(보고·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시정명령) 시·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참고로, 정부는 2024년 7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서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제외하는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9호)을 제출하였고, 이는 2024년 9월 20일 공포·시행되었는데,
- 당시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법정교육을 이수하고, 지자체가 지정한 광역·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소속되어 관리·감독을 받는 직원으로서 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서비스 수요자와 다툼이 발생할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⁷⁾

□ 다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내담자의 재무수준, 건강이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습득·활용하여 현재의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상담·교육과 관계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논리적·분석적 판단과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089호), 2024.

2. 「모자보건법」의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종사자 및 산후조리도우미’

□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종사자’ 및 ‘산후조리도우미’의 결격사유⁸⁾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김도읍의원안(제2919호)
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5조의2(결격사유) ----- ----- ----- -----.
1.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18세 미만인 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8) 「모자보건법」 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15조의19(산후조리도우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산후조리도우미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5조의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① (생 략)	제15조의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② ----- ----- -----.
1. <u>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1.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산후조리업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종이고,⁹⁾

산후조리도우미는 임산부·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임.¹⁰⁾

□ 산후조리업과 산후조리도우미는 ‘분만 직후의 임산부¹¹⁾’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를 수행하므로 각 종사자에게는 상황판단능력과 주의가 요구되고,

이들에게 요구되는 상황판단능력과 주의가 충족되지 못하여 발생

9)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0)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1)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하는 안전사고는 임신부나 영유아의 건강 등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종사자의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이나 낙상 등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데 요구되는 고도의 판단력·이해력을 고려하여 그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경우에도 재가방문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신생아 및 산모를 돌보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상황판단·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신생아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약사법」의 ‘약사·한약사’

- 개정안은 ‘약사’ 및 ‘한약사’의 결격사유¹²⁾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김도읍의원안(제2919호)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5조(결격 사유)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u>	2. <u>피성년후견인</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약사’와 ‘한약사’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¹³⁾

약사·한약사가 되려면 대학에서 약학과·한약학과를 졸업하고 약학사·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한약사국가시험에

12) 「약사법」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약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료법」·「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합격하여야 하는바,¹⁴⁾ 약사·한약사로서의 사무처리능력을 사전에 검증할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약국개설자에 대하여 의약품 폐기명령을 비롯한 시정명령,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유형으로 제재할 수 있고,¹⁵⁾ 약사·한약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점¹⁶⁾ 등을 고려할 때 약사·한약사에 대한 사후적 통제방안도 마련

14) 「약사법」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①약사(藥師)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1.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제4조(한약사 자격과 면허) ①한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한약사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준다.

15) 「약사법」 제69조의4(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71조(폐기 명령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품 제조업자·의약품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53조제1항·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판매·저장·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등이나 불량한 의약품등 또는 그 원료나 재료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①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신고 수리의 취소(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소 폐쇄(제31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의2에서 같다), 영업소 폐쇄(제42조제1항,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의2에서 같다),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6) 「약사법」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3.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 1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2.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되어 있다고 볼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한약사는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의약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¹⁷⁾ 등 다른 직종에 비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주의가 요구되어야 할 직무의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에 대한 전문가인 약사는 의약품의 조제·투약, 약물복용에 대한 복약지도 등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독자적인 판단능력과 고도의 정신능력 및 사무처리능력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결격사유로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한 현행 조문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17)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③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3.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아니할 것
4. 의약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5.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 것(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제 또는 판매행위를 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할 것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 관리사·안경사’

□ 개정안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의 결격사유¹⁸⁾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김도읍의원안(제2919호)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u> 4. (생략)	제5조(결격사유) ----- ----- ----- 1. 2. (현행과 같음) 3. <u>피성년후견인</u> 4. (현행과 같음)

□ ‘의료기사’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종류에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가 있으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이고,

‘안경사’란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임.¹⁹⁾

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중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가 되려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무를 전공하고 졸업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므로,²⁰⁾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로서의 사무처리능력을 사전에 검증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의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²¹⁾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가 가능한 점²²⁾을 고려할 때,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의

- 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 2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면허) ①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2. ~ 3. 삭제 <1999. 2. 8.>
 4.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 2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22조(자격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하 생략)
- 2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시정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

사무처리능력이 제한될 때 이를 통제할 사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 그런데,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²³⁾를 살펴보면,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혈액의 체혈), 방사선사(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물리치료사(기계·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및 도수치료), 작업치료사(각종 재활훈련) 및 치과위생사(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임시 부착물의 장착 및 치석 등 침착물의 제거)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직무가 수행되더라도 환자의 신체안전과 직접 연관된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다른 직종에 비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치과기공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의 경우에는 치과기공물·안경 등 기구의 제작이나 기록·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 등 의사·치과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거나 안경의 조제·판매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담당하여 신체에 직접적·물리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직무를 수행한다고 볼 측면이 있으므로,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각각의 개별 직무별로 고려하여 결격사유의 정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2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이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등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상환판단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등 고도의 사무처리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그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대한병원협회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기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제외되면 정신적 제약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보완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5. 「의료법」의 ‘의료인 및 의료법인의 임원’

□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의료법인의 임원’의 결격사유²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김도읍의원안(제2919호)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2. (생략) 3.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u> 4. (생략)	제8조(결격사유 등) ----- ----- ----- 1. 2. (현행과 같음) 3. <u>피성년후견인</u> 4.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임원)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3. 4. (생략) ⑤ (생략)	제48조의2(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u> 3.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24)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48조의2(임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의료인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는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 후 의학사·치의학사·한의학사 학위를 받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되고,²⁵⁾ 조산사 면허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쳤거나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가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였을 때 부여되며,²⁶⁾ 간호사 면허는 대학·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 후 졸업하였거나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부여되는바,²⁷⁾

의료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일정 수준의 학력을 전제로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므로 각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처리능력을

25)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26) 「의료법」 제6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자

27) 「의료법」 제7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사전 검증할 제도는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의료인의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이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²⁸⁾을 고려할 때, 의료인의 사무처리능력이 제한될 때 이를 통제할 사후적 방안도 있다고 볼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의료인의 직무는 환자의 생명 및 신체안전과 직접 연관되므로 다른 직종에 비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직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며,

의료인의 사무처리능력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환자의 생명·신체 등 중요 법익에 대하여 회복이 불가능 비가역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식 및 업무수행능력이 요구되므로 그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대한병원협회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인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제외되면 정신적 제약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보완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8)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의료법인의 임원

-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그에 필요한 자금 등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²⁹⁾ 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등에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³⁰⁾

의료법인 임원을 선임할 때 사무처리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거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부적격자를 해임하는 사후퇴출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의료법인 임원으로서의 사무처리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거나 사후에 통제하는 적절한 수단이 미비된 측면을 고려하여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의료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9) 「의료법」 제48조(설립 허가 등) ①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30) 「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6.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위탁제조판매업자’

□ 개정안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및 위탁제조판매업자’의 결격사유³¹⁾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김도읍의원안(제2919호)
제23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가 등) ① ~ ⑤ (생략)	제23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이나 위탁제조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⑥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u>	2. <u>피성년후견인</u>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⑦ ~ ⑩ (생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3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가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이나 위탁제조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이 법 및 「약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료법」·「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42조 또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위탁제조판매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제조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위탁제조판매업소가 폐쇄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 나. 제2호에 해당하여 제조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위탁제조판매업소가 폐쇄된 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은 경우
7.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첨단바이오의약품이란 세포나 조직 또는 유전물질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으로서, 그 종류에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등이 있음.³²⁾

□ 따라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위탁제조판매업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³³⁾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첨단바이오의 약품을 투여받을 환자의 생명 및 신체안전에 비가역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여야 하는바, 그 결격사유에서 피한정 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첨단바이오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세포치료제: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 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한 의약품. 다만,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의 최소한의 조작을 통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유전자치료제: 유전물질의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투여하는 것으로서 유전물질을 함유한 의약품 또는 유전물질이 변형·도입된 세포를 함유한 의약품

다. 조직공학제제: 조직의 재생, 복원 또는 대체 등을 목적으로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 있는 세포나 조직에 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의약품

라.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가 물리적·화학적·결합(융합, 복합, 조합 등을 포함한다)하여 이루어진 의약품. 다만, 주된 기능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그 밖에 세포나 조직 또는 유전물질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3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품질 관리의무 및 보고) ①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등 감염성 질환을 가진 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채취한 인체세포등을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지 말 것. 다만, 투여 받을 대상자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채취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체세포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만 제조에 사용할 것

3.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4.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할 것

5. 그 밖에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살아 있는 세포·조직 등을 원료로 하여 체내에 장기간 머무는 점에서 합성의약품과 다른 특성을 가지는 만큼 그 원료의 채취나 생산 및 사후 관리 등의 전 과정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위탁제조판매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대마재배자’

□ 개정안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대마재배자’의 결격사유³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김도읍의원안(제2919호)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①·② (생 략)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③ ----- ----- ----- -----.
1. <u>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u>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u>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이고,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란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이며, ‘대마재배자’란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농업인임.

3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마약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 중독자
3. 「약사법」·「의료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밖에 마약류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마약류의 폐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등 마약류취급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마련되었다고 볼 측면이 있으나,³⁵⁾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포괄하는 용어로,³⁶⁾ 마약류 및 그 원료 물질이 적정하게 취급·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오·남용되면 보건상의 위해와 사회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직무라 볼 수 있음.

- 특히 마약류의 도난·유출 등 사고는 보건상의 비가역적인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공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결격사유 정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과 불법유통 가능성이 있는 마약류 특성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마약류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위기관리 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이 요구되므로 피한정후견인을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폐기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보고된 마약류나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마약류 및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제조·판매·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①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결격사유³⁷⁾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김도읍의원안(제3435호)
제3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32조의2(결격사유) ----- ----- ----- -----.
1. <u>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1.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함.³⁸⁾

-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³⁹⁾으로서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3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기요양기관 설립·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3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⁴⁰⁾

2018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6년)이 신설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심사를 실시하여 지정 갱신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검토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고,⁴¹⁾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가 주의의무를 해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을 관리할 역량이 불충분한 경우에 대한 보완책을 정하고 있는바,⁴²⁾

4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갱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3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4.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3의5.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적절히 관리하며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제공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사후 검증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다만,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노인 등과 현장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사업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직무의 성격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노인 등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업무처리능력이 필요하므로 그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의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3의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응급구조사’

- 개정안은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⁴³⁾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김도읍의원안(제3435호)
제3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1. 2. (생 략) 3.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u> 4. (생 략)	제37조(결격사유) ----- ----- ----- 1. 2. (현행과 같음) 3. <u>피성년후견인</u> 4. (현행과 같음)

-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⁴⁴⁾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바,⁴⁵⁾

4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가. 이 법
 - 나.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8조(의료과실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7조제1항
 - 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44)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4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①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그 직무는 응급환자의 생명 및 신체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상당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직무의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야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不能)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자체의 판단에 따라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음.⁴⁶⁾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으로 응급환자의 생명·안전 보호의 관점에서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정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대한병원협회는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제외되면 정신적 제약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보완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조(업무의 제한)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 하고는 제41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不能)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0.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보조공학사’

□ 개정안은 ‘보조공학사’의 결격사유⁴⁷⁾에서 피한정후견인과 피특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김도읍의원안(제3435호)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다.	제16조(결격사유)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u>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u>	3. <u>피성년후견인</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등이 해당됨.⁴⁸⁾

47)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8)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보조공학사’는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등 보조기기의 사용자에게 보조기기의 사용법을 교육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조기기의 생산·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으로,

보조공학사가 되려면 학교 등에서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보조공학, 노인학, 인체운동학 등)을 10개 이상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므로,⁴⁹⁾ 그 직무수행능력을 사전에 검증할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임.

□ 또한, 보조공학사에 대하여는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⁵⁰⁾ 보조공학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조기기 이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바,⁵¹⁾

49)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의 상담·사용법 교육·정보제공 또는 생산·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하 “보조공학사”라 한다)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종류·취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공학사의 자격 요건)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해야 한다.

②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했을 것.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단체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했을 것.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0)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보조공학사: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복귀한 날부터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을 것. 이 경우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51)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

보조공학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처리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가 사후적으로 관리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보조공학사의 직무는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등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러한 ‘보조기기’는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질병·상해·장애를 진단·치료할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⁵²⁾’와 달리 이용자의 생명 및 신체안전과 직접 관련성이 비교적 낮다고 볼 측면이 있으므로 그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과 피특정후견인을 보조공학사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인데, 피특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에 비하여 후견인의 지원이 필요한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가 제한적이므로,⁵³⁾ 피한정후견인이 그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경우 피특정

관은 보조공학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조공학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조기기 이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2. 제17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52)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53)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후견인도 함께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보조공학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게 된다면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사후보완 기능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⁵⁴⁾에 ‘보조공학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대여한 때
2.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인력’

- 개정안은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⁵⁵⁾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김도읍의원안(제3435호)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1. 2. (생략) 3.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u> 4. ~ 7. (생략)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 ----- ----- 1. 2. (현행과 같음) 3. <u>피성년후견인</u> 4. ~ 7. (현행과 같음)

-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⁵⁶⁾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활동지원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이 각각 규정되어 있음.

5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가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제30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활동지원급여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⁵⁷⁾ >

활동 지원 급여	서비스 내용	자격요건
활동 보조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u>요양보호사</u>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u>사회복지사</u>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u>간호사</u> ○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u>간호조무사</u>
방문 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u>요양보호사</u> 중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방문 간호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u>간호사</u> 로서 2년 이상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u>간호조무사</u> 로서 3년 이상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u>치과위생사</u>

5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의 범위·업무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활동지원사)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

제20조(활동지원사의 자격)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4.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 그런데,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있는 요양보호사⁵⁸⁾와 사회복지사⁵⁹⁾의 결격사유에서는 이미 피한정후견인이 제외되어 있어, 피한정후견인인 요양보호사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피한정후견인인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에 따른 ‘가정봉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모두 현행법상 가능한 반면,⁶⁰⁾

서비스의 내용이 사실상 동일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개정안에 따른 결격사유 정비를 통하여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9)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0)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1.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생활에 밀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돌봄 및 사회생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결격사유를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지방의료원 임원’

□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임원’의 결격사유⁶¹⁾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김도읍의원안(제3435호)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u>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3. ~ 5. (생략) ②·③ (생략)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1. (현행과 같음) 2.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으로,⁶²⁾ 2024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총 35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서, 원장 1명, 이사 8~12명 및 감사 1명 등 임원을 두어야 하는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원장·감

6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

6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分院(分院)을 둘 수 있다.

사)하거나 그 임명을 승인하되(이사), 원장과 이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⁶³⁾ 이 과정을 통하여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한 사전검증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면서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 여부와 정도 등을 함께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고,⁶⁴⁾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운영진단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원장에게 해당 지방의료원 임원의 해임을 요청⁶⁵⁾할 수 있어

6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8조(임원)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3. 감사(監事) 1명
- ②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③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지방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우 지역의 보건소장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명 이상
 2.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3.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5.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6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과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 여부와 이행정도를 함께 평가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원장을 해임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후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평가나 운영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임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간접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임원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되었을 때 임면권자가 그 임원을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입법례⁶⁶⁾를 참고하여 보다 직접적인 사후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임원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임원임명 전 임원자격 적합 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그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더라도 지방의료원 이사회 구성·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6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운영평가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경영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공공의료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경영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원장에게 해당 지방의료원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6) 「국민연금법」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해임) ②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이하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②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문 의 처
02)6788-5510